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을 한도로 면세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장이나 제조장”을 각각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판매 또는 제조”를 “제조”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를 “매월)”로,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로,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0조의3 후단 중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를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

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
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것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을
“제조장으로부터”로, “판매장·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6항 중 “물품 또는 판매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판매 또는 제조하러”를 “제조하러”로, “판매장·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
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판매업·제
조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제22조 중 “판매장·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
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
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판매업·제조업 또는 영업”을 “제조업 또
는 영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장·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판
매업·제조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판매할 것
3. 납세자는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u></p> <p>1. <u>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u>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u>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u>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p> <p>3. 과세물품의 <u>판매 또는 제조</u>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u>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u>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②·③ (생략)</p> <p>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p>	<p>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① ----- ----- <u>제조장</u>----- ----- -----.</p> <p>1. <u>제조장</u>----- ----- -----.</p> <p>2. <u>제조장</u>----- ----- -----</p> <p>3. ----- <u>제조</u>----- ----- <u>제조장</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 ----- -----</p>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 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 매월) -----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

----- 제조장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판매장 ·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⑧ (생략)

제10조(납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판매장 ·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

③ ~ ⑤ (생략)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 · 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2. -----
-----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 · 납부) -----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 2. (생략)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마. (생략)

<신설>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

제18조(조건부면세) ① -----

-----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

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
입하는 것

4. ~ 13. (생략)

② ~ ⑥ (생략)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
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
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
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
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2. (생략)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같은 판매장·제조장(제
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
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

4. ~ 1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제조장으로부터 -----

----- 제조장 -----

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제21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①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물품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④ 과세물품의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

----- 제조하려-----

----- 제조장·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조업 -----

⑤ -----

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장·제조장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판매업·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판매장·제조장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

제조업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

-----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 제조업 또는 영업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조장 -----
----- 제조업 -----

세유 흥 장소 · 과세 영업 장소의
영업을 포괄 승계 하는 경우 승
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 · 의무를
승계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4331